

소비자경보

개인형퇴직연금(IRP) 계좌개설 및 운용시 유의하세요

소비자경보 2022-8호 (2022년8월24일)

등급 **주의** 경고 위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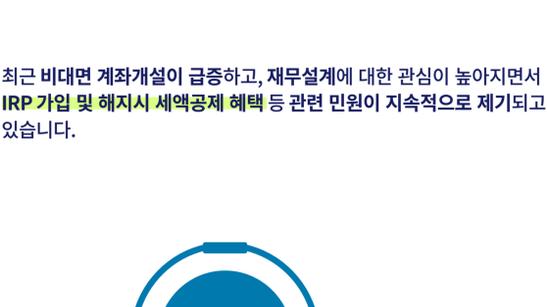
대상 금융소비자 일반

금융환경 급변,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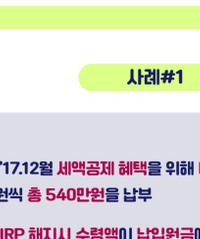
금융거래 전반의 최근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

신속민원처리센터는 '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.

은행권역은 퇴직/은퇴 후 노후설계를 위한 정책상품인 개인형퇴직연금(IRP)의 계좌개설 및 운용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

최근 비대면 계좌개설이 급증하고, 재무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IRP 가입 및 해지시 세액공제 혜택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.



사례#1

김OO는 '17.12월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IRP계좌를 개설하고 월 10만원씩 총 540만원을 납부

'22.5월 IRP 해지시 수령액이 납입원금에 미치지 못하자 원금보장형 상품에 가입했는데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민원 제기

* 김OO는 원금보장을 위해 1년 만기 은행예금 100%로 상품운용을 선택

→ 은행(퇴직연금사업자)이 관련법에 따라 자산매도 금액에서 세액공제분 등을 차감하기 때문에 납입원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.

사례#2

2년차 직장인 박OO는 '21.12월 연말정산에 임박하여 IRP계좌를 개설하면서 7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'22.4월 계좌확인 과정에서 약 15만원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

은행직원이 '세액공제용, 정기 예·적금 같은 상품'으로 설명하여 안전하다고 믿고 가입하였는데 원금손실이 발생하였으니 불안한 판매에 해당한다는 민원 제기

→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안전판매를 입증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, 신청인이 펀드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민원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.

사례#3

직장인 손OO는 '17.1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에 가입하고, '22.3월 퇴사시 퇴직금 수령을 위해 같은 은행에서 IRP계좌를 개설

운용중이던 상품(현물)이 그대로 IRP계좌로 이전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은행이 임의판매하여 현금입금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제기

→ 은행 퇴직급여 신청서 신청란(선택적 기재)에 현물이전 희망의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,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은행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

[퇴직급여신청서 양식(예시)]

3. 퇴직금 지급신청 정보 ※ 필수 외의 부분은 해당 시 반드시 기재			
입사기간(월수) 직장요청 주3) 참고	퇴사일자(월수) 직장요청 주3) 참고	지급신청일자(월수) 직장요청 주3) 참고	입원여부 (월수)
중간정산할 하지 않은 가입자 : 최초 입사일자 중간정산할 간 가입자 : 최종 중간정산일 다음날 재외일수	가산일수	지급형태 (월수) (액 1)	<input type="checkbox"/> 임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임원직책 소득한도 (임원직 경우만 기재)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형IRP <input type="checkbox"/> 연물이전 신청 - 당행 IRP만 가능 / 미납퇴직금 입금 불가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시금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형IRP & 일시금 <input type="checkbox"/> 55세이후 퇴직자 <input type="checkbox"/> 300만원이하 <input type="checkbox"/> 300만원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 현사(퇴직)가액 <input type="checkbox"/> 퇴직연금가액
2022.12.31 연말 2023.03.01 이후	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적화적(중도)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이주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	<input type="checkbox"/> 사망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납퇴직금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(W)	<input type="checkbox"/> 영입정액 입금 <input type="checkbox"/> 퇴직가액에 의한 무통장 연동 지급

※ 비교 사례
A은행의 확정기여형 퇴직금(DC) 가입자인 B는 운용 중이던 ETF를 A은행의 IRP계좌로 현물이전 신청하였으나, 은행직원의 전산 미등록으로 ETF가 매도됨
→ 민원 처리결과 : 동일상품·수량 재매입 부족액을 현금 배상하도록 합의권고

소비자 행동요령

1

IRP계좌 가입 및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.

IRP는 중도해지시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되어 해지로 인한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.
※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명



IRP는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.5%가 부과됩니다.
※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(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, 개인회생 및 파산, 천재지변 등)를 소명할 경우 저율과세 적용 : 16.5% 대신 3.3~5.5% 적용

IRP 중도해지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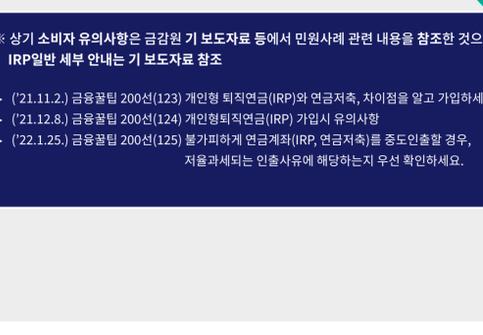


소비자 행동요령

2

은행 IRP가 반드시 원금보장형 상품은 아닙니다.

IRP 운용시 은행 예·적금과 같은 원금보장을 희망할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운용지시를 하여야 합니다.
※ IRP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, 펀드, ETF, 리츠 등으로 다양하며, 금융권역·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지시할 필요



소비자 행동요령

3

확정기여형 퇴직급여(DC) 수령목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방식(현물 또는 현금)을 명확히 의사표시하여야 합니다.

확정기여형 퇴직급여(DC) 수령목적으로 IRP를 개설한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방식을 표시하여야 합니다.
· (현물) 퇴직급여(DC)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IRP계좌로 그대로 이전
· (현금) 퇴직급여(DC)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모두 현금으로 청산하여 이월 이전

※ 상기 소비자 유의사항은 금감원 기 보도자료 등에서 민원사례 관련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IRP일반 세부 안내는 기 보도자료 참조

- (21.11.2.) 금융포럼 200선(123) 개인형 퇴직연금(IRP)과 연금저축, 차이점을 알고 가입하세요.
- (21.12.8.) 금융포럼 200선(124) 개인형퇴직연금(IRP) 가입시 유의사항
- (22.1.25.) 금융포럼 200선(125) 불가피하게 연금계좌(IRP, 연금저축)를 중도인출할 경우,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지는 우선 확인하세요.